

(주)교원과 서울교육대학교의 산학협력 양해각서

(주)교원과 서울교육대학교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응한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, 창의력진단도구 개발과 증진 방향에 대한 연구 및 교육사업 전반에 대한 업무를 추진하며 다음 사항에 대해 상호 협조하도록 노력한다.

제1조(목적) 본 양해각서는 (주)교원과 서울교육대학교(이하 '양 기관' 이라 한다)의 창의력진단도구 개발과 증진 방향에 대한 연구 및 교육사업 전반에 대한 상호 협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기본원칙) 양 기관은 상호 협력하여 공동 연구 및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제 규정을 존중하고 호혜평등의 원칙을 준수한다.

제3조(협력분야) 양 기관은 다음의 사항들에 대해 상호 협력함은 물론 이를 발전시키도록 노력한다.

1. 창의력진단도구 및 진단보고서 개발(지필고사 및 활동중심 도구)
2. 창의력 대회(가제)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협력 강화
3. (주)교원 및 서울교육대학교 국제과학영재교육센터 협력 강화
4. 유·초등 교육 서비스 및 학습자료 개발
5. 교사연수 및 교육사업 전반에 대한 상호협력

제4조(비밀엄수) 본 양해각서와 관련된 활동을 통하여 습득한 상대 기관의 비밀 사항을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공개하지 않는다.

제5조(유효기간) 본 양해각서는 체결일로부터 5년간 유효하다. 또한 유효기간 만료일 1개월 전까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이의 내지는 양해각서의 종료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효력은 자동적으로 1년씩 연장된다.

제6조(양해각서의 변경 및 해지) 양 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협의에 의하여 양해각서에 규정한 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. 단,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양해각서는 해지된다.

1. 양 기관이 양해각서 해지를 협의하였을 경우
2. 어느 한 기관의 양해각서 위반으로 다른 기관이 양해각서 폐기를 서면으로 통보한 후 1개월이 경과한 경우
3. 단, 이 양해각서가 해지된 경우에도 상호 협력이 진행중인 사항은 유효한 것으로 간주

제7조(법적효력) 본 양해각서는 제4조의 비밀엄수 의무를 제외하고 양 기관에 대한 어떠한 법적 구속력도 가지지 않는다.

제8조(효력발생) 양 기관은 양해각서에 날인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하며, 양해각서의 효력은 양 기관이 서명한 날로부터 발생한다.

제9조(기타) 본 양해각서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 또는 해석상 이의가 있는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.

2019. 3. 29.

**KYO
WON** 교원

(주)교원

대표 장 평 순



서울교육대학교
Seoul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

서울교육대학교

총장 김 경 성

